

성신여대 2021학년도 모의 인문 1번

- ☞ 제시문 <가>에 기술된 '감염병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사생활 제한 정책'은 제시문 <나>의 관점 ①과 관점 ② 각각에서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평가될 수 있다. 제시문 <나> ①, ②의 관점에서 어떻게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가능한지 각각 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한국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800~1,000자)

<가>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 인류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유행병(pandemic)으로 야기된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가 강행한 봉쇄조치 없이도 감염병 전파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감염예방 물품과 생필품의 매점매석, 사재기가 횡행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경우는 마스크를 사거나, 투표할 때뿐이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 세 가지 비결인 '검사', '추적', '억제'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중순에 전 세계를 향해 '검사, 검사, 검사'를 애타게 주문하기 몇 주 전부터 한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12,000명을 검사할 능력을 갖추었고,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와 워크인(walk-in) 등의 방식을 통해 10분 안에 무료로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24시간 안에 피검사자의 휴대전화로 전달되었다.

한국이 감염병 확산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올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검사는 물론이고 접촉자를 추적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모바일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들의 최근 동선을 밝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휴대폰 GPS 추적, 감시 카메라 기록,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보조수단으로 동원하였다. 이토록 세밀한 추적 덕분에 한국질병관리본부는 감염자가 확진 판정 전에 다녔던 곳을 대중에게 낱낱이 실시간으로 경고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경고 안내문에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그리고 방문했던 장소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일각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인권이지만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생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사생활 제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견고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와 대중의 건강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임의적 결정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5월에 발행한 보고서 『코로나19 억제 정책: 팬데믹 대응을 위한 한국의 ICT 활용 사례』를 보면, 한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신속한 검사, 재빠른 추적, 원활한 치료를 통해 “20일 만에 성공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증가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었던” 데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결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나>

① 우리는 수많은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와 같은 의무에 따라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에 따라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은 행위의 가치가 본래 정해져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진실을 말하는 행위는 본래 옳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는 본래 그르다. 즉 인간의 어떤 행위는 그 자체의 가치에 의해 옳고 그름이 온전히 결정되며, 따라서 그 행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영향 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어기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은 것이므로, 아무리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당면한 상황에서 갖게 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가장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러한 의무에는 각 개인이 져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고, 국가가 져야 할 의무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면 그것을 목격한 개인은 자신이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구조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하며, 국가는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이 개인에게 닥치지 않도록 제도를 갖추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의무는 여럿일 수 있으며 심지어는 그 의무들이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만약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조하려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면 타인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의무는 자신의 목숨을 소중히 해야 하는 의무와 충돌하게 된다. 물론 이럴 경우 두 의무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온갖 방안을 먼저 강구해보겠지만 그럼에도 충돌이 불가피하다면 우리는 관련된 의무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곧 나중 순위의 의무를 최소한으로 위배하면서 앞선 순위의 의무를 완수할 방안을 찾아 이를 실행한다는 것을 뜻한다.

②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우리는 어떤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를 고려하기도 한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결과에 의존하며, 따라서 올바른 행위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행위의 가치는 그 자체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 도덕적 문제 상황은 다양하며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위의 가치는 각 상황의 결과에 의해 결정되며,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가장 좋은 결과의 산출이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는 수단은 도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이라는 행위가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준다면, 거짓말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 각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들을 먼저 모두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행위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결과를 낳는 행위만이 정당성을 갖게 된다. 그러나 여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무엇이 가장 좋은 결과인지에 대해 일치된 답을 찾기가 어렵다. 이를테면 어떤 이는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는 없다고 하고, 다른 이는 때로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할 숭고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둘째, 가장 좋은 결과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를 낳기 위해 현 상황에서 취해야 할 가장 적절한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 일치된 답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목숨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라는 데 모두 동의하더라도, 지금 직면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가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지, 다시 말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지에 대해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또한 같은 선택이라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 일이 허다하므로, 각 상황이 갖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행위와 결과를 달리 계산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얼마든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성신여대 2021학년도 모의 인문 2번

- ☞ 제시문 <다>에 소개된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에 비추어 제시문 <가>에 나타난 한국 정부의 확진자 정보 수집 및 공개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십시오. 그리고 아래 일어난 세 개의 사례를 고려하여 제시문 <다>의 사생활 보호 원칙에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하는지 논술하십시오. (800~1,000자)

<사례>

-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의 중심에 있는 한 남성이 서울의 성소수자 거리에 있는 클럽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오에 따라, 인권 단체들은 그 남성과 접촉한 사람들의 성 정체성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코로나19 감염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됨에 따라 해당 식당과 영화관은 최소 2주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영업이 재개된 이후에도 확진자 방문 이전과 비교할 때 매출의 60%가 감소하였다.
- 중고교생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최근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은 바이러스 그 자체보다 바이러스 감염 또는 전파로 인해 친구들에게 따돌림이나 망신을 당하는 것을 더 무서워한다고 한다.

<가>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 인류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세계적 유행병(pandemic)으로 야기된 혼란 속에서도 한국은 세계 여러 나라가 강행한 봉쇄조치 없이도 감염병 전파를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감염예방 물품과 생필품의 매점매석, 사재기가 횡행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비교적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줄을 서는 경우는 마스크를 사거나, 투표를 할 때뿐이다. 이제 세계는 한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는 데 성공한 세 가지 비결인 '검사', '추적', '억제'에 주목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중순에 전 세계를 향해 '검사, 검사, 검사'를 애타게 주문하기 몇 주 전부터 한국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었다. 하루 평균 12,000명을 검사할 능력을 갖추었고,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와 워크인(walk-in) 등의 방식을 통해 10분 안에 무료로 진단검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는 24시간 안에 피검사자의 휴대전화로 전달되었다.

한국이 감염병 확산에 성공적으로 대처해 올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정보통신기술을 토대로, 검사는 물론이고 접촉자를 추적하여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모바일 기술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들의 최근 동선을 밝히도록 하였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휴대폰 GPS 추적, 감시 카메라 기록, 신용카드 거래 내역을 보조수단으로 동원하였다. 이토록 세밀한 추적 덕분에 한국질병관리본부는 감염자가 확진 판정 전에 다녔던 곳을 대중에게 낱알이 실시간으로 경고해줄 수 있었다.

그러나 경고 안내문에 확진자의 성별과 나이, 그리고 방문했던 장소의 이름과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됨으로써 일각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생활 보호가 중요한 인권이지만 감염병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절대적 권리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생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사생활 제한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견고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와 대중의 건강 보호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임의적 결정에 의한 조치가 아니라 법률에 근거를 둔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5월에 발행한 보고서 『코로나19 억제 정책: 팬데믹 대응을 위한 한국의 ICT 활용 사례』를 보면, 한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신속한 검사, 재빠른 추적, 원활한 치료를 통해 “20일 만에 성공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 증가곡선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었던” 데는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이 결정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 ICCPR: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 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다>

정보화는 우리의 삶에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는 사생활 침해, 사이버 범죄, 정보 격차 등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개인의 정보가 정보화 기기를 통해 노출되면서 자신의 행동이나 기록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거나 악용되는 사생활 침해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개인의 소득과 신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신체와 의료 정보 등을 수집, 저장, 관리하면서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으로는 개인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개인 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 수준을 높이는 등의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최근 우리 정부는 정보통신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관련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이미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피해를 봤다면 신속하게 신고하여 2차 피해를 막아야 한다.

일찍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하였으며, OECD 이사회는 2013년 7월 11일 이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각국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해 왔다. 국내에서 ‘OECD 사생활 보호 8대 원칙’으로 많이 알려진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NO.	원칙	상세 설명
1	수집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정보 정확성의 원칙	개인정보(데이터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3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 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4	사용 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5	보안 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사용·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6	공개성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사용 목적과 함께 정보 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7	개인 참여의 원칙	정보 주체인 개인은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8	책임의 원칙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 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